국회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9월 29일

국 무 총 리 한 성 숙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 장관 윤 호 중
(법무부 소관)

◉법률 제22002호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검찰청법」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, “제4조제2항은”을 “제4조제5호 및 제6호는”으로, “군검찰관의”를 “군검사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·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,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)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, 제199조, 제200조, 제200조의2, 제200조의3(제2항은 제외한다), 제200조의4(제6항은 제외한다), 제200조의5, 제200조의6, 제201조(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), 제201조의2, 제204조, 제208조, 제209조, 제212조, 제213조, 제213조의2, 제214조, 제214조의2, 제214조의3, 제215조, 제215조의2,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, 제219조 전단, 제221조, 제221조의3, 제221조의4, 제237조, 제239조부터 제243조까지, 제243조의2,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“사법경찰관” 또는 “사법경찰관리”는 “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”로, “수사기관” 또는 “각급 공소청 및 지청”은 “특별검사”로 각각 보되, 제243조 중 “사법경찰관리”는 “특별수사관”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2, 제200조의4, 제201조, 제215조, 제215조의2,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,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,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,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.

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137조,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“사법경찰관” 또는 “사법경찰관리”는 “특별검사” 또는 “특별검사보”로 본다.

제8조의3(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)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8조의4(구속기간에의 산입)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2, 제200조의3,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.

제9조제4항 중 "「검찰청법」"을 "「공소청법」"으로, "검사의"를 "검사 및 군검사의"로 한다.

제10조제5항 전단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"를 "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고등검사장의"를 "광역공소청장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검사장의"를 "지방공소청장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,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,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.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